



진술조력인 관련 입법례

- 독일을 중심으로 -

2020-13호 (통권 제127호, 2020.5.19.)

최신 외국입법정보

발행처 국회도서관 | 발행인 현진권 | 작성자 박진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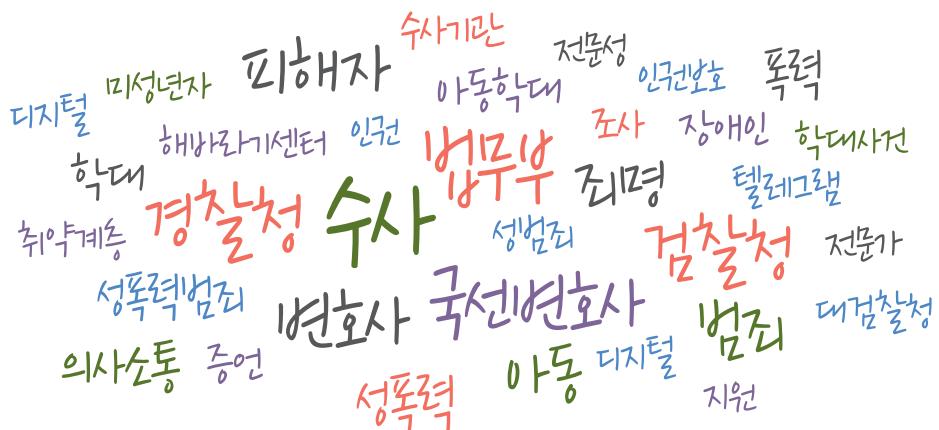
- 법무부는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일선 검찰청 및 경찰청에게 죄명에 상관 없이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선정해 지원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¹⁾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이다.
-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에 대응하는 제도로 독일에는 ‘사회심리적 소송절차 조력인’이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에게 재판전, 재판중 및 재판후에 전문가에 의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 이 보고서에서는 독일「형사소송법」제406g조와 「형사절차에서의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규정을 검토하고, 영국과 오스트리아의 입법례를 보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 진술조력인 제도의 입법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1) 2020. 3. 25. KBS 뉴스 “법무부 n번방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선변호인·진술조력인 지원”; 머니투데이 기사 “n번방 피해자 전원 국선 변호사 지원받는다.”; 2020. 4. 20. 서울경제 기사 “심리 상담에 임시거처 제공…범죄피해자 마음까지 보듬죠.”

국회도서관 Argos(bigdata.nanet.go.kr)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결과

분석어: 진술조력인

분석기간: 2019. 1. 1.~2020. 4. 30.



시사점

지원대상

- 우리나라 진술조력인 제도의 지원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한정된다.
- 독일의 진술조력인 제도는 2차 피해를 방지한다는 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위가 넓다. 일반적으로는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뿐만 아니라 약취·유인·유기·강도 등의 범죄 피해자로서, 만 18세 미만의 사람 또는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지원한다. 나아가 특별한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과 오스트리아의 경우도 우리나라 보다 지원대상을 넓게 규정하고 있다.

진술조력인의 역할 규정

- 우리나라 진술조력인 제도 관련법 규정은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의사소통의 중개 또는 보조를 통한 원활한 조사와 증인신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2차피해 방지의 제도 취지를 법 규정에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진술조력인 제도

법적 근거	「성폭력처벌법」§35 이하 「아동학대처벌법」§17 「가정폭력범죄특례법」§3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지원 대상	피해자 ○ 피의자, 피고, 증인 ×
범죄 유형	성폭력범죄(「성폭력처벌법」§36① - 13세 미만 아동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어려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17) - 「성폭력처벌법」§36① 준용

- 독일 「형사절차에서의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부담을 줄이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체 형사절차에서의 정보전달, 전문적인 관리 및 지원이 진술조력인의 활동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술조력인의 자격 및 양성 교육 과정

- 우리나라는 진술조력인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폭력처벌법」§35에서 법무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분야의 실무경험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독일 「형사절차에서의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4조는 진술조력인의 자격과 교육 과정에 관하여 자문능력, 의사소통 및 협력능력, 갈등 대처능력 등과 아울러 지원대상 관련 의학, 심리학, 피해자학, 범죄학 및 법률 분야의 기본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격을 진술조력인 본인이 확인하고 확보할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로 진술조력인 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자격과 양성과정에 있어서 독일의 관련 입법례를 참조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독일은 일괄개정법률인 “2015년 12월 21일 제3차 피해자권리개혁법”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²⁾를 강화하는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 프로그램’(‘형사소송법’(StPO)³⁾ 제406g조)을 도입하였다.⁴⁾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법원비용법을 개정하고, 「형사절차에서의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PsychPbG)⁵⁾을 제정하여 2017년 1월 1일 발효하였다.

「형사소송법(StPO)」

- 제406g조에서 범죄피해자는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술조력제도의 원칙 및 진술조력인의 자격과 진술조력의 보상에 대한 요구사항은 2015년 12월 21일 「형사절차에서의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고 입법위임을 하고 있다.
- 지원대상은 보조기소(Nebenklage)⁶⁾를 할 수 있는 범죄(제397a조제1항) 중 일반적인 지원대상으로 [표 1]의 범죄 피해자로서 만18세 미만인 자 또는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자이다. 나아가 특별한 보호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표 2]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모살(謀殺) 및 고살(故殺)의 경우 미수범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 약취·유인, 스토킹, 강도 등의 범죄에 의하여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자가 해당된다.

2) 독일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형사절차 전반에 걸친 범죄피해자 지원 규정에 포함하여 지원 및 보호가 이루어진다. 「형사소송법」 제5권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참여」 부분의 사인기소(제374조~제394조), 보조기소(제395조~제402호), 범죄피해자보상(제403조~제406c조), 범죄피해자의 기타 권한(제406d조~제406l조) 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관여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Strafprozeßordnung: StPO, 제정: 1950. 9. 12, 최종 개정: 2020. 3. 3. BGBl. I S. 431) <http://www.gesetze-im-internet.de/stpo/StPO.pdf>

4) 범죄피해자의 권리,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2012년 10월 25일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2012/29/EU) 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이다. 독일은 범죄피해자보호에 있어서 이미 높은 수준의 보호를 달성했으므로, 유럽연합 지침은 절차적 및 정보적 권리와 관련하여 일부 영역에서만 실현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BMJV)는 밝히고 있다. 연방소비자보호부 홈페이지의 설명: https://www.bmjjv.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DE/Staerkung_Opererrechte_Strafverfahren.html?nn=6765698

5) 「형사절차에서의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PsychPbG, 제정: 2015. 12. 21. BGBl. I S. 2525, 2529) <http://www.gesetze-im-internet.de/psychpbgs/PsychPbG.pdf>

6) 독일에서는 피해자 소송참가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단순히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관여하여 피해자로서의 의견 및 입장을 소송에 반영하고 진실 규명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피보호자에의 성적 남용, 아동에의 성적 남용, 강간, 강간치사, 미성년자에의 성행위 강요,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는 제기된 공소 또는 보안처분 신청에 대한 보조기소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95조 이하).

[표 1] 독일 진술조력인 제도의 일반적인 지원 대상

구분	해당 「형법」 규정	요건
성폭력범죄, 학대 피해자	제174조~제182조(성폭력범죄), 제225조(피보호자에 대한 학대)	해당 행위 당시 만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이거나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자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의 피해자	제221조(유기), 제226조(중상해), 제226a조(여성 성기 절단), 제232조~제235조(약취, 미성년자 약취·유인), 제237조(강제결혼), 제238조제2항 및 제3항(스토킹 치사상 등), 제239a조(인질강도), 제239b조(인질강요), 제240조제4항(중강요: 성행위, 낙태, 직권남용), 제249조(강도), 제250조(중강도), 제252조(준강도), 제255조(강도에 준하는 공갈), 제316a조(운전자에 대한 강도적 공격)	고소 당시 만 18세에 달하지 아니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자

[표 2] 독일 진술조력인 제도의 특별한 보호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구분	해당 「형법」 규정	요건
성적 남용 등	제177조(성적 강요, 강간), 제179조(항거불능자(장애인)에 대한 성적 남용), 제232조~제232b조(인신매매, 강제성매매, 강제노동), 제233a조(자유의 박탈을 남용한 착취)	피해자
모살, 고살	제211조(모살), 제212조(고살)	미수범의 피해자
성폭력범죄	제174조~제182조(성폭력범죄), 제184i조(성희롱), 제184j조(집단성폭행)	사망한 자의 가족
약취·유인, 스토킹, 강도 등	제226조(중상해), 제226a조(여성의 성기의 절단), 제234조~제235조(약취·유인, 납치, 미성년자 약취·유인), 제238조~제239b조(스토킹, 자유박탈, 인질강도·강요 등), 제249조(강도), 제250조(중강도), 제252조(준강도), 제316a조(운전자에 대한 강도적 공격)	동죄에 의하여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자

- 범죄피해자는 신청에 의하여 진술조력인을 배정받아야 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범죄피해자 진술조력 서비스는 무료로 지원된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진술조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⁷⁾

7) 독일 연방법무소비자부(BMJV) 홈페이지의 설명: https://www.bmjjv.de/DE/Themen/OpferschutzUndGewaltpraevention/Prozessbegleitung/Prozessbegleitung_node.html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PsychPbG)」

- 동법은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406g조의 수권에 따라 제도의 원칙, 진술조력인 자격에 대한 요구사항, 보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 중 원칙과 자격 규정을 검토한다.
- 진술조력인 제도의 원칙(제2조)
 - 진술조력인 제도는 형사절차에서 공판 전후 및 공판 중에 특히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한 특별한 비법률적 형태의 제도이다.
 - 피해자의 개인적인 부담을 줄이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체 형사 절차에서의 정보 전달, 전문적인 관리 및 지원이 진술조력인의 활동에 포함된다(진술 조력인의 역할).
 - 진술조력인 제도에는 형사절차에 대한 중립성 및 상담과 조력의 분리라는 특징이 있다. 진술조력인의 활동은 법률 자문이나 사실 해명을 포함하지 않으며 증인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증인의 진술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없다. 진술조력인은 진술조력활동을 시작할 때 이와 같은 사항 및 진술조력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진술조력인의 자격(제3조, 제4조)
 - 진술조력인은 전문적, 인격적 및 복합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사회교육학, 사회복지, 교육학, 심리학 분야의 대학 졸업 또는 이 분야 중 한 분야의 직업교육을 수료하여야 하고, 언급된 분야 중 한 분야에서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주(州)에서 승인한 진술조력인 양성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 진술조력인은 본인이 필요한 개인 자격을 갖추었는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자격에는 특히 자문능력, 의사소통 및 협력 능력, 갈등 대처능력,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 및 조직능력이 포함된다.
 - 복합적인 전문성을 위해서는 특히 지원이 이루어지는 목표집단과 관련된 의학, 심리학, 피해자학, 범죄학 및 법률 분야의 기본지식이 필요하다.
 -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현장지원에 관한 지식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 정기적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책임이 있다.
 - 각 주(州)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위하여 어떤 사람과 기관을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직업훈련, 실무경험, 전문화된 추가 교육 및 정규 연수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확정한다.

영국, 오스트리아의 진술조력인 제도

- 영국의 진술조력인 제도의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인 자 또는 “취약한 증인”이다.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위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동석제도이다. 반면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심리·사회적 진술조력 제도에 법률적 조력까지 결합한 형태이고, 친척의 살해를 목격한 다른 친척까지 지원한다.⁸⁾

[표 3] 양국의 진술조력인 제도 비교

국가	영국	오스트리아
제도 명칭	진술조력인 제도 (Witness Intermediary Scheme: WIS)	심리·사회적 및 법률적 소송절차 조력 제도 (psychosoziale und juristische Prozessbegleitung)
근거 규정	『1999년 청소년사법형사증거법』 (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99)	『형사소송법』(StPO) 제66조제2항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판시 만18세 미만인 자 * “취약한 증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년 정신건강법』(Mental Health Act 1993)의 정의에 의한 정신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증인 - 지능적·사회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이 있는 증인 - 신체장애를 갖고 있거나 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증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완전성을 침해당한 피해자로서 14세 미만의 자에게는 필수적 지원 * 배우자, 파트너, 형제, 자매 또는 범죄로 살해된 사람의 친척 및 친척의 살해를 목격한 다른 친척
지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인에 대한 질문을 증인에게 전달 - 증인의 답변을 신문하는 자에게 전달 - 증인 또는 신문하는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질문과 답변을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사회적 지원: 당사자가 겪게 되는 소송절차와 이와 연결된 감정적인 부담에 대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신문에 동석 * 법률적 지원: 피해자가 형사 소송에서 보장받을 권리 를 집행하는 역할
관리 감독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연방법무부(Bundesministerium Justiz)
참조	https://www.gov.uk/guidance/ministry-of-justice-witness-intermediary-scheme	https://www.justiz.gv.at/home/buergerservice/opferhilfe-und-prozessbegleitung/prozessbegleitung--grundlagen~2c94848535a081cf0135a49ef4880021.de.html

8) 그 밖에 미국,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라엘,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의 진술조력인 제도에 관한 내용은 김유근·전영실·탁희성,『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및 발전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16.; 김동혁·임낭연,『범죄피해 진술조력』 박영사, 2018. 참조.

최신 외국입법정보

2020년도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자문단 회의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지난 5월 6일 '2020년도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제21대 국회의 입법지원에 필요한 외국법률과 외국법률번역 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